안전의 시작은 나로부터

중부재해예방관리원(주)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 유) 업무담당자

제 목 [안내문] 2016년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과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실시하여 할 법정 의무교육으로써 정부기관의 인정을 받은 교육기관에서 사업장 신규채용교육을 대체 법정교육 4시간을 실시 하는 교육입니다.

3. 관련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제32조의2·제32조의3, 산안법 시행령 제26조의11 부터 제26조의13, 산안법 시행규칙 제37조의2 부터 제37조의5,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13조의2 부터 13조의8

4. 다음과 같이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필요한 회원분들에게 안내 및 참고 부탁 드립니다.

붙 임 : 1. 2016년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안내문 1부. 끝.

중부재해예방관리원(주) 대표이사 전 원 혁

수신자 : 대한전문건설협회 강원도회, 대한전문건설협회강원도회),대한건설기계협회(강원도지회, 충청북도회, 충북지회), 대한설비건설협회(충북도회, 강원도회), 대한주택건설협회(충북도회, 강원도회).

당당자(당당) 김성진 검토자(전결) 대표이사 전 원 혁

시행: 2016-중부-003 (2016.01.28)

우 220-130 강원도 원주시 치악로 1535 (관설동, 3층) E-mail: 2248161785@hanmail.net

전화: 033-900-6112 전송: 033-900-6111 H/P: 010-4424-6938

ccccccccc-1.JPG
(825 X 1167)

[2016년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안내문]

가. 교육대상: 건설업 일용 근로자

나. 교육구분

- 일반교육 : 건설업 일용 근로자
- 무료교육 : 취약계층 건설일용근로자

※ 원주 상시교육장 무료교육 진행 중(단, 원주상시교육장에 한함)

- 지원대상 : 취약계층 건설일용근로자

1.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지자체 등록된 수급자)
2. 장애인(장애인등록증/카드 지참)
3. 장기실업자(취업희망카드를 소지한 3개월 이상 실업자)
4. 만 55세 이상 고령근로자(신분증)

다. 신청방법

- 교육 전날까지 전화접수 또는 신청서 팩스전송(FAX.033-900-6111)
- 교육 일정 참고 : 당사 홈페이지(www.jbsafety.kr) 및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www.kosha.or.kr)

라. 교육수료 후

- 이수증 및 간식지급

마. 문의사항

- 담당자: 교육부 김성진 과장
- 연락처: TEL.033-900-6112, FAX.033-900-6111

ccccccccccc-2.JPG
(825 X 1167)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실시

교육일정 매일 오전(9시부터), 오후(13:30분부터) 탄력적 운영

접수방법 유선접수 ▶ 033-900-6112

인터넷접수 ▶ 홈페이지 접수가능 (중부재해예방관리원(주) www.jbsafety.kr)

교육구분 1.일반교육 2. 무료교육 (정부지원예산으로 상시교육장에 한함)

※인원제한으로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상시교육장 주소 강원도 원주시 치악로 1535 3층 (판부농협 하나로마트 주차장 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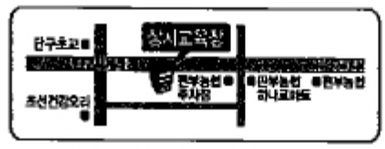

※ 출장교육(춘천,속초,강릉)은 별도 문의하여 주십시오.

무료교육대상

1. 만 55세 이상
2.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지참)
3. 장애인 (장애카드, 증명서 지참)
4. 장기실업자 (희망카드 3개월 이상 소지자, 희망카드지참)

무료교육 신청절차

참가신청(유선,인터넷)	교육실시	이수증카드 당일발급	
개 인	신분증지참	교육수료와 동시지급	

중부재해예방관리원에서 하는일

1.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전 건설현장의 채용 시 대체 교육
2. 건설재해예방안전기술지도	건축, 토목공사 3억원 이상(관급포함), 건축 120억원, 토목 1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건설안전 기술지원, 교육 및 상담 등
3. 민간위탁사업(건설분야)	대상(3억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 예방을 위해 정부 사업비지원, 안전기술지원, 현수막 등 안전자료 무료배포)
4. 유해위험방지(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건설기술진흥법 제 98조 의거 작성)
5. 관리감독자 안전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연간 16시간 또는 8시간

중부재해예방관리원(주)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등록받은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이며 고용노동부지정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입니다.

tel 033.900.6112 fax 033.900.6111 homepage www.jbsafety.kr

고용노동부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안전의 시작은 나로부터 중부재해예방관리원(주)

cccccccccc-3.JPG
(825 X 1167)